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3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4명

나.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성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제1항제7의2는 운수종사자의 자동차 안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는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청결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택시 차량 내 담배냄새 및 악취 등으로 승객 승차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차량 실내공기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행위를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승객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판 등을 부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4항)
-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행위를 추가(안제5조제6항제4호)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내문 등을 차내 부착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신설(안제5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2022. 10. 3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동의

- 택시이용환경 개선 및 택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동의함

1) 교통정책과-36060호('22.12.15.)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의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승차거부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 행위”를 추가하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택시 실내공기 청결 유지 노력 관련(안 제5조제4항)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내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하여 차량내부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²⁾ 및 제27조의2³⁾에서는

여객과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나 여전히 차내흡연 사건⁴⁾이 발생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⁴⁾에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내 청결 관련 교통불편신고⁶⁾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임

- 따라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내금연과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악취, 냄새 등으로 인한 승객의 불쾌감 유발 감소 및 쾌적한 택시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 규정 관련(안 제5조제6항제4호)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6항제4호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를 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택시운수종사자 흡연 관련 단속 및 신고건수, 처분건수 현황

(市 내부자료)

연도	단속 및 신고 건수	처분 건수	처분율
2020년	638	547	85.7%
2021년	743	640	86.1%
2022년 1~9월	328	264	80.5%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 가.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22년도 택시 차량 청소상태 불량 민원 접수 건수

('22. 11. 21. 기준/市 내부자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건수	23	3	1	1	3	1	2	3	-	3	3	3

로이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전국적으로 운전자 폭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⁷⁾(’18년 2,425건, ’21년 4,261건)하는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 및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2⁸⁾에서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여객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조례개정안을 통해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를 승차거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한 운송거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차내 안내문 부착 및 예산지원 관련(안 제5조제7항)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7항은 승객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가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7)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어져... ‘보호격벽’ 설치 언제쯤(NEWSIS, ’22.6.9.)

- 전국 운전자 폭행 ’18년 2,425건→ ’20년 2,894건 → ’21년 4,261건(경찰청 잠정) 증가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와 해당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해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는 것은 택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보이며

차내 안내문 부착시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가 사무관리비 등으로 이미 관련예산을 편성운영 중이라는 점⁹⁾에서 안내문 등 부착에 따른 비용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9)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7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내문 등을 차내 부착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2년도 택시 지원 관련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5조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개선명령 송달 등)	170,00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

- 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④ (생략)</p> <p>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생략)</p> <p><u><신 설></u></p>	<p>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u></p> <p>⑤ (현행 제4항같음)</p> <p>⑥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u></p>